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 303 회 임시회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

2024. 4.

남현주 의원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제안자: 남현주 의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먼저,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이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시설 이용료 반환 규정에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,
-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 정부 정책에 호응하고, 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“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” 을 “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”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.

□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안 제8조제1항은 운영자 귀책으로 인한 위약금 배상 내용을 신설 하였습니다.
- 별표2 제7호의 다자녀 감면 혜택을 “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” 을 “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” 개정하였습니다.

-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
 -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2024년 4월 5일부터 2024년 4월 15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 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.
-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,
 - 본 조례안은 시설 이용료 반환 규정에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, 청소년 수련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“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”에서 “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”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【남현주 의원 대표 발의】

의안 번호	00924039
----------	---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4. 5.

발의자 : 남현주, 이영빈, 서민우,
손범구, 권숙자, 정창근,
고명욱, 임미연, 박정환

1. 제안이유

-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시설 이용료 반환 규정에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,
-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 정부 정책에 호응하고, 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“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”을 “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”으로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운영자 귀책으로 인한 위약금 배상 내용 신설(안 제8조제1항)
- 나. 다자녀 감면 혜택을 “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”을 “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”으로 개정(별표2 제7호)

3. 개정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소비자기본법」 제16조
- 나. 비용추계: 비대상

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이용료 등의 반환) ① 이용자의 취소 및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, 이용료의 반환 및 위약금 배상 등의 기준은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을 준용한다.

② 천재지변,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 이용료 전부를 반환한다.

별표 2 제7호 “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아이조아카드 소지자”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7.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아이조아카드 소지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8조(이용료의 반환) ① 납부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.</u></p> <p>1. 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된 때</p> <p>2. 천재지변,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</p> <p>3. 이용자가 취소 신청을 한 경우</p> <p>②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「소비자분쟁 해결기준」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한다.</p>	<p><u>제8조(이용료 등의 반환) ① 이용자의 취소 및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, 이용료의 반환 및 위약금 배상 등의 기준은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을 준용한다.</u></p> <p><u>② 천재지변,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 이용료 전부를 반환한다.</u></p>

신·구 별표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
<p>【별표 2】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이용료의 감면 내실(제7조 관련)</u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<td>1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</td></tr> <tr><td>2.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의 청소년을 위한 행사</td></tr> <tr><td>3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</td></tr> <tr><td>4.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동반한 1명 포함)</td></tr> <tr><td>5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</td></tr> <tr><td>6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td></tr> <tr><td>7.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아이조이카드 소지자</td></tr> <tr><td>8.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(연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)</td></tr> <tr><td>9.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</td></tr> <tr><td>10.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병역명문가증 소지자</td></tr> <tr><td>11. 만 13세 이상 만 55세 이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</td></tr> <tr><td>12.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td></tr> </table>	1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	2.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의 청소년을 위한 행사	3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	4.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동반한 1명 포함)	5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	6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7.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아이조이카드 소지자	8.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(연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)	9.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	10.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병역명문가증 소지자	11. 만 13세 이상 만 55세 이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	12.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	<p>【별표 2】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이용료의 감면 내실(제7조 관련)</u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<td>1. (현행과 같음)</td></tr> <tr><td>2. (현행과 같음)</td></tr> <tr><td>3. (현행과 같음)</td></tr> <tr><td>4. (현행과 같음)</td></tr> <tr><td>5. (현행과 같음)</td></tr> <tr><td>6. (현행과 같음)</td></tr> <tr><td>7. ----- 두 명 ----- ---</td></tr> <tr><td>8. (현행과 같음)</td></tr> <tr><td>9. (현행과 같음)</td></tr> <tr><td>10. (현행과 같음)</td></tr> <tr><td>11. (현행과 같음)</td></tr> <tr><td>12. (현행과 같음)</td></tr> </table>	1. (현행과 같음)	2. (현행과 같음)	3. (현행과 같음)	4. (현행과 같음)	5. (현행과 같음)	6. (현행과 같음)	7. ----- 두 명 ----- ---	8. (현행과 같음)	9. (현행과 같음)	10. (현행과 같음)	11. (현행과 같음)	12. (현행과 같음)
1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																									
2.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의 청소년을 위한 행사																									
3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																									
4.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동반한 1명 포함)																									
5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																									
6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																								
7.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아이조이카드 소지자																									
8.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(연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)																									
9.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																									
10.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병역명문가증 소지자																									
11. 만 13세 이상 만 55세 이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																									
12.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																									
1.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
2.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
3.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
4.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
5.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
6.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
7. ----- 두 명 ----- ---																									
8.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
9.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
10.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
11.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
12.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

【 관계법령 】

□ 소비자기본법

제4조(소비자의 기본적 권리)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.

5.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·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

제16조(소비자분쟁의 해결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·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②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 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.

□ 소비자기본법 시행령

제8조(소비자분쟁해결기준) ①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한다.

②제1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④공정거래위원회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

야 하며, 소비자단체·사업자단체 및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□ 소비자분쟁해결기준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소비자기본법」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(이하 "분쟁 당사자"라 한다)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피해구제청구)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,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.

제3조(품목 및 보상기준)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, 품목별분쟁 해결기준,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,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I, 별표 II, 별표 III, 별표 IV와 같다.

56. 체육시설업,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(3개 업종)

체육시설업, 레저용역업, 할인회원권업 (1 - 2)		
분 쟁 유 형	해 결 기 준	비 고
1)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	○ 계약해제	*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「회원제 체육시설업」 제외
2) 시설고장, 정원초과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	○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이용대체 ○ 배상액 배상	· 회원제 골프장업, 스키장업, 요트장업,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
3) 신체상 피해발생		
4)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	○ 전액환급 및 총이용	

체육시설업, 레저용역업, 할인회원권업 (1 - 2)			
분쟁 유형	해결 기준	비고	
- 개시일 이전	금액의 10% 배상	* 개시일이란, 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최초이용일, 기간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말함.	
- 개시일 이후	○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% 배상		
체육시설업, 레저용역업, 할인회원권업 (2 - 2)			
분쟁 유형	해결 기준	비고	
5)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			
- 개시일 이전	○ 총이용금액의 10% 공제 후 환급		
- 개시일 이후	○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% 공제 후 환급		
○ 사은품 반환			
-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			
· 사은품 미사용 시 : 해당 사은품 반환			
· 사은품 사용 시 :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(단, 단순포장개봉은 사은품 사용으로 보지 아니함.)			
·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: 현존상태로 반환			
-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· 해지 시: 사업자에게 사은품 반환하지 않음.			
○ 체육시설업			
- 수영장, 체력단련장, 테니스장, 대중종합체육시설업, 골프연습장 등			
○ 레저용역업			
- 이벤트 주관, 주말농장, 영화예매 등			
○ 할인회원권업			
- 여러 업종의 판매업소를 가맹점으로 확보한 후, 회원을 모집하고 일정 금액의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업종			

61.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(2개 업종)

학원운영업, 평생교육시설운영업		
분 쟁 유 형	해 결 기 준	비 고
<p>1) 사업자가 다음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이 사실을 안 후 지체 없이 계약해제 요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허위·과장광고에 의한 수강계약 체결 - 정원을 초과한 수강생 모집 및 교습 - 무자격 또는 자격미달강사에 의한 교습(단, 강사의 자격기준은 학원법, 평생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함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 ○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 ○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 	<p>*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 학교교과 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 기로 저장한 것을 말함.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함.</p> <p>* 계약 시 수강료와 교재비 등을 따로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함.</p>
2) 사업자가 위 각호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계속 수강하다가 계약해제 요구	○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	* 일할(日割)계산
3) 수강기간도중 학원인가 또는 등록취소, 일정기간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학원의 이전, 폐강, 기타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불능	○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	* 일할(日割)계산 하여 사용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환급함.
<p>4)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교습개시 전 - 교습개시 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교습기간이 1월 이내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이후 · 교습기간이 1월 초과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○ 수강료의 2/3 해당액 환급 ○ 수강료의 1/2 해당액 환급 ○ 미환급 ○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(교습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.)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	<p>* 총 교습시간은 교육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함.</p>